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함
 - 안 제4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신규대비표 붙임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8조 단서 중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보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u>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다만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4조(경비보조) ① ----- ----- ----- <u>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u>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u> 2. <u>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u>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수당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	제18조(수당등의 지급) ----- ----- ----- ----- ----- -----<경우에는 제외>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9조 (생 략)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소관 실 · 과 · 소		평생교육과
입 안 자	과 장	김 중 순
	담 당	나 동 식
	담 당 자	허 정 주 (480-4353)